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00 발의연월일: 2021. 6. 18.

발 의 자:소병철・양정숙・정찬민

오영환 · 용혜인 · 이장섭

이학영 · 김종민 · 박성준

김정호 · 임호선 · 장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 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발생 시 출국이 제한되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또는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은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 대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또는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한다.